

「직제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2. 14. 개정 판 (시행 2022. 2. 1.) → 2026. 3. 9. 개정 판 (시행 2026. 3. 9.)

바뀜 32 · 신설 4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68/compare?from=1251&to=172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0:06:4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구)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 <개정 2022-02-14> 1. 대학 기본 기관 : 총장, 부총장 2. 대학원 : 일반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 3. 대학 : 신학대학, <u>인문사회대학</u>, <u>보건복지대학</u>, <u>과학기술대학</u>, <u>미래융합대학</u>, <u>문화예술대학</u>, <u>간호대학</u>, <u>약학대학</u>, <u>스미스학부대학</u> 4. 행정본부 :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<u>대외협력처</u>, <u>연구산학처</u>, <u>총장특보(비서실)</u>, <u>내부감사실</u>, <u>재무실</u>, <u>입학처</u> 5. 위원회 :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. 대학부속기관 : 대학교회, 생활건강증진원, <u>재림교회/엘렌G화잇연구센터</u>, <u>박물관</u>, <u>출판부</u>, <u>대학언론사</u>, <u>인성교육수련원</u>, <u>공통기기실</u>, <u>그린교육장</u>, <u>실험동물연구센터</u>, <u>एको팜센터</u>, <u>임송실습교육장</u> 7. 부속교육기관 : <u>국제교육원</u>, <u>평생교육원</u>, <u>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</u>, <u>보육교사교육원</u>, <u>유치원/어린이집</u>, <u>생활교육원</u> 8. 부설연구기관 : <u>융합연구센터</u>, <u>부설연구소</u>, <u>자율연구소</u>, <u>북아태지회연구소</u>, <u>정책연구소</u> 9.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. <삭제 2022-02-14> 11. 교육혁신원 12. 글로벌사회혁신원 13. <삭제 2022-02-14> 14. 학술정보원 15. <u>캠퍼스사업단</u> 16. 예비군대대 17. 학교기업 18. <u>재정지원사업단</u>: <u>국책사업추진기획단</u>, <u>수익사업단</u> 19. <삭제 2022-02-14>	제3조(기구)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. <개정 2022-02-14> 1. 대학 기본 기관 : 총장, 부총장 2. 대학원 : 일반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 3. 대학 : 신학대학, <u>창의융합대학</u>, <u>미래융합대학</u>, <u>간호대학</u>, <u>약학대학</u> <개정 2024-09-30> 4. 행정본부 : 교목처, 교무처, 학생처, 기획처, 사무처, <u>국제처</u>, <u>연구처</u>, <u>재무처</u>, <u>입학처</u> <개정 2024-09-30> 5. 위원회 :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. 대학부속기관 : 대학부속기관 : 대학교회, 생활건강증진원, <u>재림교회/엘렌G화잇연구센터</u>, <u>박물관</u>, <u>대학언론사</u>, <u>인성교육수련원</u>, <u>공통기기실</u>, <u>실험동물연구센터</u>, <u>SU-FARM</u>, <u>ITTC국제중독센터</u> <개정 2024-09-30> 7. 부속교육기관 : 평생교육원,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, 유치원/어린이집, 생활교육원 <개정 2024-09-30> 8. 부설연구기관 : 융합연구센터, 부설연구소, 자율연구소, 북아태지회연구소, 정책연구소 9.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. <삭제 2022-02-14> 11. 교육혁신원 12. 글로벌사회혁신원 13. <삭제 2022-02-14> 14. 학술정보원 15. <삭제 2026-03-09> 16. 예비군대대 17. 학교기업 18. <삭제 2023-02-13> 19. <삭제 2022-02-14> 20. <u>대학일자리본부</u> 21. <u>SU인권센터</u> 22. <u>AI융합교육원</u><개정 2026-01-26> 23. <삭제 2026-03-09> 24. <u>브랜드전략본부</u><개정 2025-04-07> 25. <u>내부감사실</u> 26. <u>RISE사업단</u> <신설 2025-01-06> 27. <u>국제전략원</u> <신설 2026-03-09>
제6조(총장특보(비서실)) <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총장특보(비서실)를 두며 필요에 따라 총장특보를 임명할 수 있다.> <전면개정 2022-02-14>	제6조(브랜드전략본부) ① <u>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.</u><개정 2025-04-07> ② <u>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, 부속팀장을 둔다.</u>

현행	개정안
	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,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. ④ 대외협력팀은 대학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, 대외협력팀장을 둔다.〈신설 2026-03-09〉 〈전면개정 2022-02-14〉
제7조(대학원)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.	제7조(대학원)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. 〈개정 2024-09-30〉
제8조(교학팀)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.	제8조(교학팀) 대학원에 교학팀과 최고경영자과정을 둔다. 〈개정 2025-10-13〉
제11조(스미스학부대학)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,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팀,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, 기초학문학부, 창의융합학문학부,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, 교직과를 둔다. ③ 〈삭제〉	제11조
제12조(교목처)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를 둔다.	제12조(교목처)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, 교목부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〈개정 2025-01-06〉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, 선교사훈련센터, BFFL센터, 리더십센터를 둔다. 〈개정 2023-09-04〉
제13조(교무처)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, 교원인사업무, 시간강사업무, 학적, <u>Su-innovation academy</u>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.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, 학사지원팀, <u>SU-innovation Academy</u>을 둔다.	제13조(교무처)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, 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, 교원인사업무, 시간강사업무,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. 〈개정 2023-09-04〉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, 학사지원팀, <u>교양교육원</u>을 둔다. 〈개정 2023-09-04〉 ③ <u>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, 핵심교양부, 융합교양부, 교양과정, 교직과정을 둔다. 〈신설 2025-01-06〉</u>
제15조(기획처)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, IR센터 업무, 대학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〈개정 2022-02-14〉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, IR센터,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. 〈개정 2022-02-14〉	제15조(기획처)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, <u>평가</u> 및 예산에 관한 업무, IR센터 업무, AI대학혁신센터 업무,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〈개정 2022-02-14〉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, IR센터,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, SUPREME센터,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. 〈개정 2022-02-14〉

현행	개정안
	③ IR센터,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.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. <신설 2024-09-30>
제16조(사무처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, 시설관리팀, 건축·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총무인사팀(총무, 인사, 구매, 경비, 수송, 주차정산소)을 둔다. 2. 시설관리팀(관재, 영선, 전기통신, 기관, 조경, 미화)을 둔다. 3. 건축·안전관리팀(건축, 안전관리)을 둔다.	제16조(사무처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, 시설관리팀, 건축·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-02-13> 1. 총무인사팀(총무, 인사, 경비, 수송)을 둔다. 2. 시설관리팀(관재, 기관, 조경, 미화, 교육미디어지원)을 둔다. 3. 건축·안전관리팀(건축, 안전관리, 영선, 전기/통신)을 둔다.
제17조(대외협력처)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,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.	제17조(국제처) ①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,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를 통할한다. ②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(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), 글로벌인재지원센터(Global Talent Support Center), 글로벌교류센터(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), 글로벌협력센터(Global Partnerships Center)를 둔다. <전면개정 2023-02-13> <개정 2024-09-30>
제18조(연구산학처)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.	제18조(연구처) <개정 2026-03-09>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<개정 2026-03-09> ② 연구처에 연구산학팀, 실험동물연구센터, 공통기기실을 둔다. <개정 2026-03-09>
제19조(재무실) ① 재무실에 재무실장을 두며 재무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재무실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.	제19조(재무처)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.
제19조의2(입학처)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연구산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. <신설 2022-02-14>	제19조의2(입학처)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. <개정 2023-02-13> <신설 2022-02-14>
제23조(생활건강증진원)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, 건강증진센터, BLS센터,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.	제23조(생활건강증진원)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센터, 건강증진센터를 둔다. <개정 2023-09-04>

현행	개정안
제24조(재림교회/엘렌G화이트연구센터) <u>재림교회/엘렌G화이트연구센터에</u> <u>재림교회/엘렌G화이트연구센터장을 두며</u> <u>재림교회/엘렌G화이트연구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</u> <u>재림교회/엘렌G화이트연구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.</u>	제24조
제25조(박물관)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.	제25조(박물관) ①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박물관에 학예팀과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<신설 2024-09-30>
제28조(공동기기실험실) 공동기기실험실에 공동기기실험실장을 둔다.	제28조
제28조의2(그린교육장) 그린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. <신설 2022-02-14>	제28조의2(SU-FARM) SU-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<u>그린교육장</u> , <u>에코팜센터</u> , <u>대학실습교육장</u> 을 둔다. <신설 2022-02-14> <전면개정 2023-02-13>
제28조의3(실험동물연구센터) <u>실험동물연구센터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을 둔다.</u> <신설 2022-02-14>	제28조의3
제28조의4(에코팜센터) <u>에코팜센터에 담당자를 둔다.</u> <신설 2022-02-14>	제28조의4
제28조의5(임송실습교육장) <u>임송실습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.</u> <신설 2022-02-14>	제28조의5
제29조(국제교육원)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,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, 국제학생지원센터, <u>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, 한국어교육센터,</u> <u>국제하계대학운영센터</u> 를 둔다.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.	제29조
제36조(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)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,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, 연구지원팀, 기술사업화팀, 재무회계팀, 구매자산팀, 감사팀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산학협력지원센터, 창업보육센터,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, 센터장, 사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-02-14>	제36조(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)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,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, 연구지원팀, 기술사업화팀, 재무회계팀, 구매자산팀, 감사팀,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, 산학협력지원센터, 창업보육센터, 기술지주회사, <u>미래캠퍼스사업단</u> 을 두고 필요시 팀장, 센터장, 사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-02-14>

현행	개정안
제37조(SU인권센터)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SU인권센터 내에 <u>인권상담실, 양성평등상담실</u> 을 둔다. 각 실마다 실장을 둔다. <전면개정 2022-02-14>	제37조(SU인권센터)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SU인권센터 내에 <u>팀장</u> 을 둔다. <개정 2023-02-13> <전면개정 2022-02-14>
제38조(교육혁신원)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<개정 2022-02-14>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, 교육인증센터, 원격교육지원센터,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.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. <개정 2021-09-13> [제목개정: 2022.02.14.]	제38조(교육혁신원)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<개정 2022-02-14>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, 교육인증센터, 원격교육지원센터, 비교과통합센터, <u>SU-PREME센터</u> 를 둔다.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. <개정 2021-09-13> [제목개정: 2022.02.14.]
제39조(글로벌사회혁신원) ① 글로벌사회혁신원에 글로벌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벌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벌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글로벌사회혁신원 내에 리더십센터, 콘서트토리, 사회봉사단을 둔다. 각 센터/단마다 센터장, 단장을 각각 둔다. <전면개정 2022-02-14>	제39조(글로벌사회혁신원) ① 글로벌사회혁신원에 글로벌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벌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벌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글로벌사회혁신원 내에 사회봉사팀, <u>사회혁신팀</u> 을 둔다. <개정 2025-01-06> <전면개정 2022-02-14>
제40조(학술정보원)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, <u>기록물관리팀</u> 을 둔다. <개정 2022-02-14>	제40조(학술정보원)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.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, <u>재림교회/엘렌G.화잇연구센터</u> 를 둔다. <개정 2022-02-14>
제41조(캠퍼스사업단) <u>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.</u>	제41조
제44조(재정지원사업단) ① 재정지원사업단에 재정지원사업단장을 두며, <u>재정지원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정지원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</u> ② 재정지원사업단에 내에 <u>국책사업추진기획단</u> 국책사업추진기획팀, 수익사업단 수익사업팀을 둔다. 각 단마다 단장을 둔다. <전면개정 2022-02-14>	제44조
제45조	제45조(AI융합교육원)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, <u>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</u> <개정 2026-01-26>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<u>AI융합교육센터,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, S/W중심대학사업단,</u>

현행	개정안
	AI융합학생창업센터, ITTC센터를 두며,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6-01-26>
<신설>	제46조의2(내부감사실) ① 내부감사실에 내부감사를 두며, 내부감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내부감사실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 <신설 2024-09-30> ② 내부감사실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내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24-09-30> ③ 내부감사실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24-09-30>
<신설>	제46조의3
<신설>	제46조의4(RISE사업단) ① RISE사업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RISE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. ② RISE사업단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<신설>	제46조의5(국제전략원) 국제전략원에 국제전략원장을 두며 국제전략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전략 업무를 총괄한다.
제48조(직명) ①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. ② 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으로 구분한다.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.	제48조(직명) ①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. ② 직원은 일반직, 기술직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3-02-13>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.
제50조(보직) ①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단,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⑤ <삭제>	제50조(보직) ①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단,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23-02-13> ③ 부처장, 실장,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, 센터장,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,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-02-13> 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-02-13> ⑤ <삭제>